

「2015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」 상반기 참여자 모집공고

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□ 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「2015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」의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5년 4월 3일

중소기업청장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

1

모집 개요

□ 사업목적

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(이하 '지원대상자')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

□ 선정규모 : 15명(팀)

- * 상반기에 15명, 하반기에 10명 내외 선정 예정
- *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

□ 지원업종

서비스업, 도 소매 및 유통업,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

- * 창고, 단순 사무공간(사무실)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

□ 지원대상 :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

(창업교육 이수자) '11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과정*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

* 창업과정은 창업기초교육, 창업특화교육, 창업인턴쉽에 한하며, 15년 신규 교육 이수자의 경우 심층면접심사일의 전일까지 창업과정 수료증 제출 시 인정

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* 증서를 소지한 자

*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(傷痍者)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
- 중증장애인*의 경우 가점 부여

* 장애등급 1~2등급 및 일부 3등급(지체상지, 뇌병변, 시각, 지적 자폐성, 정신, 심장, 호흡기, 간질장애 및 국가유공자)

| 구 분 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
|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지체장애 | ● | ● | ● 상지 ○ 하지 | ○ | ○ | ○ | X | | |
| 뇌병변장애 | ●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시각장애 | ●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청각장애 | ○ | ●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언어장애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지적장애 | ●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자폐성장애 | ●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정신장애 | ●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신장장애 | ○ | ●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심장장애 | ●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| | |
| 호흡기장애 | ●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| | |
| 간장애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안면장애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
| 장루·요루장애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
| 간질장애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
| 기타법령 국가유공자 | ● | ● | ●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
1)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임(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)

2)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

3)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준용

(예비창업자)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(비영리 포함)을 하지 않은 자(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)

□ 지원제외 대상

비영리사업자(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)

- * 「상법」에 의한 회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

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(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포함)

- * 폐업사실증명 발급일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

사금융, 사치향락업종, 도박업, 부동산 및 임대업 등

- *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

비점포형 사업

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

3

지원내용

□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: 1억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

창업점포는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*에 한함

- 부동산중개수수료(월세분), 권리금, 관리비, 월세,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

- *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, 부동산중개수수료(전세보증금분), 제소전화 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

- *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,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 가액의 30%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

※ 잔존평가액 = 부동산가액(감정평가액 기준) - 선순위[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+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(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) + 센터지원금(전세보증금)]

- *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, 창업자 본인의 직계 존 비속에 속하는 경우 점포계약 불허

지원기간은 최초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, 이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까지 지원

- 최초 계약기간(2~3년)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대상자 부담

□ 시설비용*의 일부 : 지원대상자 1인(팀) 당 500만원 한도

* 시설비용의 범위 : 집기 및 인테리어비(인건비 제외), 현판□간판비

4

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15. 4. 3 ~ 4. 23. 18시 정각 도착 분 까지

□ 신청방법 :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및 센터 내방접수(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)

* 보내실곳 : (150-040)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(당산동, 6층)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앞

□ 제출서류

| 구 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|
| 공통 제출서류 | ① 창업점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신용정보제공□활용 동의서 2부(센터제출용, 신용조회회사제출용) ④ 2011년부터 센터'에서 주관한 창업과정 수료증 사본 1부 ⑤ 장애인증명서(주민센터)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⑥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 여부) 1부 - 전국세무서 민원봉사실 - 온라인 발급(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증명발급메뉴) ⑦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) - 주민등록등본 : 민원24(www.minwon.go.kr) - 가족관계증명서 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 |
| 해당자만 제출 | ① 신청아이템(업종) 관련 자격증 또는 기술교육수료증 1부 ② 관련 직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, 폐업사실증명 1부 |

□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

- * 심사위원회 : 장애인 분야 전문가,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~7명 내외로 구성

① 서류심사

-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자 중에서 선정인원(지원규모)의 3배수 이내 선발
- * 평가항목 : 창업자환경(30점), 사업계획(40점), 자금계획(30점), 가점 등

② 면접심사

-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
- * 평가항목 : 창업자 역량 및 기술(20점), 아이템 가능성(20점), 시장조사 및 운영 방안(20점), 소요자금 조달계획(20점), 사업 위험분석(20점) 등

③ 지원대상자 선정

- 1차 서류심사(30%) + 2차 면접심사(70%)를 통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(지원규모)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* 선정인원의 20%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후순위 예비후보자 선발

④ 60일 이내 점포 계약

- 지원대상자 외에 지원규모의 20% 이내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, 지원대상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*에게 자격 부여
- *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포기 또는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권한이 부여되며, 지원대상자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혜택은 없음

6

추진 절차

※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| 단 계 | 일 정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창업점포 지원 신청 접수 | 4.3 ~ 4.23 | 우편 및 내방 접수 |
| 1차 기초서류심사 | 4.29 | 선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선정평가의 30% 반영 |
|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| 5.4 |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(14:00시 이후)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|
| 2차 심층면접심사 | 5.7~5.8 | 선정평가의 70% 반영 |
| 최종 합격자 발표 | 5.12 |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선정인원의 20% 이내에서 추가 예비 후순위자 선정 |
| 협약체결 (센터, 선정대상자) | 5.15 | 협약체결, 점포개발 컨설턴트 매칭 |
| 점포개발 컨설팅 수행 (컨설턴트, 선정대상자) | 5.16 ~ 7.15 | 각 권역별 컨설턴트 지정 점포개발컨설턴트와 점포지원 선정자 간 점포개발컨설팅 수행 |
| 창업점포 선정평가 (평가위원회) | 5.16 ~ 7.15 |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점포 선정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|
| 사후관리(전담컨설턴트) | 계약체결 후 ~ | 창업 후 6개월 간 지원 |

7

지원대상자의 의무

- (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) 지원대상자(창업자)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,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며,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
- (관리비용 납부) 선정대상자(창업자)는 지원금액(전세보증금)의 1%를 관리비로 매년 센터에 납부
 - 일시납 : 매년 관리비의 10%를 감면한 금액을 1년 단위로 납부
 - 월납 : 매년 관리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납부
 - * 월납의 경우 매년 관리비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상자가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

8

기타 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
-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,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
- 선정대상자는 협약을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□소멸되며,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권한 부여

9

문의처
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(02-2181-6530, 02-2181-6532)

【붙임2.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】

자 기 소 개 서

1. 나는 어떤 사람인가? (신청자의 장애사유, 건강상태, 가정형편 등을 작성)

2. 왜 창업을 해야 하는가? (창업동기 및 목표, 창업자세 등을 작성)

2015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

| | | | |
|------|--|-----|--|
| 작성자명 | | 연락처 | |
|------|--|-----|--|

1. 사업개요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신청업종 (아이템) | |
| 주요상품 (서비스) | |
| 신청업종 선정이유 | |

2. 신청업종(아이템) 시장조사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신청지역 (입지) | |
| 지역(입지) 선정사유 | * 주 고객층 대비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 동향, 배후지 형성 등 창업 신청 지역의 상권 현황을 조사, 기입하십시오. |
| 신청지역의 경쟁업체현황 | |
|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| |

3. 신청업종 운영계획

3-1. 아이템 운영방안
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구매계획 | |
| 상품(서비스) 가격계획 | |
| 영업(홍보) 계획 | |
| 고객관리계획 | |
| 나만의 사업 차별화방안 | |

3-2. 아이템 수익계획

(1) 월 매출산출

| 상품(서비스) 구분 | 규격(사양) | 평균 판매 단가 (A) | 월 판매수 (B) | 월매출액 (C=A×B)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원 | 명(개) | |
| | | 원 | 명(개) | |
| | | 원 | 명(개) | |
| | | 원 | 명(개) | |
| | | 원 | 명(개) | |
| 합 계 | | | | |

(2) 월비용 및 이익 산출

| 비용구분 | 월 발생비용(D) | 산출근거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재료비 | 원 | |
| 인건비 | 원 | |
| 지급임차료 | 원 | |
| 관리비 | 원 | |
| 소모품비 | 원 | |
| 홍보비 | 원 | |
| 상환금 | 원 | |
| 기 타 | 원 | |
| 합 계 | | |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월 수익 (월 매출액 - 월비용액) (C - D) |
| 원 |

(3) 매출 저조 시 대처방안

| | |
|----------------|--|
| 매출 저조시 대처방안 | |
|----------------|--|

4. 자금 사용계획(월세, 시설비, 집기비품구입, 홍보마케팅비, 운영자금, 기타비용 등은 자부담임)

※ 시설비 및 집기비용구입비 중 센터지원비(500만원)는 대상자 개별적으로 하단 계획표 상에 별도 포함하여 기재

4-1. 자금소요계획

| 분 류 | 세 부 항 목 | 금 액 | | |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|--|--|--|
| 점포임대 | 전세보증금(센터지원) | | | | | 규모 : 평/월 임대료 : 원 ※ 점포지원금 이외에 권리금 등 인수비용 등 별도기재 |
| | 권리금 | | | | | |
| 시설비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집기비품 구입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초기 운영자금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개업준비비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총 소요금액 (A) | | | | | | |

4-2. 자금조달계획

| 창업자금분류 | | 금 액 |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센터지원 (C) | 임차보증금 | 원 | |
| | 시설 및 집기, 간판비 등 | 원 | |
| 자부담 (D) | 시설, 운영, 기타자금 | 원 | |
| 총 조달금액 합계 (B) = (A) = (C) + (D) | | 원 | |

4-3. 자부담금 현황

| 창업자금분류 | 금 액 |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자기자본(예금, 보험 등) | 원 | |
| 금융기관 대출() | 원 | |
| 가족□친척, 지인으로부터 차입 | 원 | |
| 기타 자금조달() | 원 | |
| 자부담금 합계 (E) = (D) | 원 | |

<수고하셨습니다>

※ '2015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' 항목설명

| 연번 | 구분 | 설 명 |
|----|-------------|--|
| 1 | 성명 | 신청자 주민등록상의 이름 |
| 2 | 주민등록번호 | 주민등록증 상의 주민등록번호(앞자리 6자리만 기재) |
| 3 | 연락처(집) | 주택의 유선전화번호 |
| 4 | 연락처(핸드폰) | 신청자(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)의 휴대폰 번호 |
| 5 | 연락처(이메일) | 신청자(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)의 이메일 주소 |
| 6 |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| 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급수 * 복합장애의 경우 장애내용 모두 기재 |
| 7 | 주 소 | 주민등록 상의 소재지 *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도 주민등록 상의 소재지를 기재 |
| 8 | 신청지역 | 점포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선택 |
| 9 | 가족사항 |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현황을 기재 *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동거여부에 구분 표시 |
| 10 | 장애사유 | 장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사유를 기재 |
| 11 | 직장경험 | 직장경험 여부와 근무년수를 기재(경력사항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) * 직장경험의 경우 재직(퇴직, 경력)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|
| 12 | 사업경험 | 사업경험 여부와 사업기간을 기재(경력사항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) * 사업경험의 경우 폐업사실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|
| 13 | 경력사항 | 사업체별 경력내용과 근로형태, 급여(소득)을 기재 |
| 14 | 관련자격증 | 신청자의 보유자격 여부 * 신청업종관련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증 내용을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은 별도로 제출 |
| 15 | 교육이수사항 | 창업교육 및 신청업종 관련 특화교육 이수 현황 |
| 16 | 거주형태 | 거주형태 및 보증금(월세) 현황을 기재 |
| 17 | 금융자산 | 보유하고 있는 예금, 보험 등 자산금액의 현황 |
| 18 | 부채여부 | 부채(대출) 내용 및 금액 현황 |
| 19 | 신용상태 |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기재 |
| 20 | 신청사업 | 신청업종(아이템) 내용과 창업소요금액을 기재 * 신청금액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원 신청할 금액 * 자부담금액은 신청자가 조달해야 할 시설 및 운영자금 |
| 21 | 정보경로 | 점포지원사업 정보 획득경로 유형을 기재 |
| 22 | 신청횟수 | 점포지원사업 신청 횟수를 기재 |
| 23 | 제출서류 | 신청 시 제출서류 여부를 기재 |

2015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[작성 예시]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자명 | 나 창업 | 연락처 | 010-1234-5678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
1. 사업개요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신청업종 (아이템) | 안마원 (점통안마, 지압, 마사지) |
| 주요상품 (서비스) | 안마, 침술, 지압(지압부분지압, 전신건강지압, 스페셜건강지압), 교정운동, 마사지 |
| 신청업종 선정이유 | 안마원 창업을 위하여 많은 시간 준비하고 노력하여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여러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론적지식과 기술을 습득함. 또한 안마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들의 다양한 성향에 대해 파악함. 안마업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힘든 고객들의 심신을 편하게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생활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|

2. 신청업종(아이템) 시장조사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신청지역 (입지) | 용산구 한남동 주변 |
| 지역(입지) 선정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타 지역 보다 비해 영업활동에 있어서 유리함 - 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 고객층인 20-40대 직장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, 병원,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- 지압의 효능과 필요성을 잘 아는 50대 이상의 고객층이 남산 주변 지역의 고급 주택가에 많이 살고 있음 - 안마원의 주 고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·반포지역과 광화문, 시청 등 도심지역의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입지임 |
| 신청지역의 경쟁업체현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○○안마원 : 오전9시-오후10시까지 영업,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안마 서비스프로그램 보유, 60분 6만원 - □□발마사지 : 오전10시-오후11시까지 영업, 30분마사지 2만원, 60분마사지 4만원, 80분마사지 5만5천원, 오일마사지는 2만원 추가 - △△마사지 : 스포츠마사지 60분 7만원, 타이마사지 60분 6만원, 90분 8만5천원, 오일마사지는 2만원추가 |
|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~40대 직장인들의 경우 장시간 컴퓨터사용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, 어깨 등의 고통으로 평일 퇴근 이후 안마,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 - 50~60대 이상의 주변지역 중장년층의 경우 허리, 관절 등 통증으로 평일 오후시간에 침 및 지압 등 방문 및 출장 서비스 수요가 예상됨 - 10대 학생 및 20대 직장 여성고객은 주말 또는 휴일에 정기적으로 척추측만증, O자다리, X자다리 교정운동을 위한 수요가 예상됨 |

3. 신청업종 운영계획

3-1. 아이템 운영방안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구매계획</p> | <p>- 안마원의 경우 상품 및 재료 구매계획은 없음</p> |
| <p>상품(서비스) 가격계획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분치료지압(30분) : 4만원 - 전신건강지압(60분) : 7만원 - 스페셜지압마사지(90분) : 9만원 - 방문서비스 : 60분 8만원, 90분 12만원 - 커플지압마사지(60분) : 12만원(2인) - 교정서비스(10회) : 40만원 - 마스크팩 및 향기요법 무료 서비스 제공 |
| <p>영업(홍보)계획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속적인 길거리(지하철 출구 및 회사 출입구) 홍보 - 인터넷 홍보(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, 파워링크 및 블로그 활용) - 모바일홈페이지와 명함의 QR코드 연동 - 현수막, 지정게시판, 무가지, 생활광고지 활용 -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 봉사 실시 |
| <p>고객관리계획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원가 비회원가 가격 차별화 (회원가 10%할인) - 회원권 재구매 고객에게 5% 추가 할인 - 기존고객이 신규고객 소개 시 5%할인 - 고객의 시술기록을 기록하여 재방문시 참고하여 고객의 신뢰 확보 |
| <p>나만의 사업 차별화방안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마 및 마사지의 건전성을 확보한 보건소 허가업체임을 강조 - 편안하고 안락한 사업장 분위기로 고객의 심신에 안정감 신뢰감 확보 -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- 현대인들의 니즈를 반영한 시술,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|

3-2. 아이템 수익계획

(1) 월 매출산출

| 상품(서비스) 구분 | 규격(사양) | 평균판매단가 (A) | 월 판매수 (B) | 월매출액 (C=A×B)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부분치료지압 | 30분 | 4만 원 | 30 명(개) | 120만원 |
| 전신건강지압 | 60분 | 7만 원 | 30 명(개) | 210만원 |
| 스페셜지압마사지 | 90분 | 9만 원 | 30 명(개) | 270만원 |
| 방문서비스 A | 60분 | 8만 원 | 15 명(개) | 120만원 |
| 방문서비스 B | 90분 | 12만 원 | 15 명(개) | 180만원 |
| 합 계 | | | 120 명(개) | 900만원 |

(2) 월 비용 및 이익 산출

| 비용구분 | 월 발생비용(D) | 산출근거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재료비 | 원 | |
| 인건비 | 240만 원 | 종업원 3인 인건비 |
| 지급임차료 | 100만 원 | 월 임차료 |
| 관리비 | 40만 원 | 전기, 수도, 가스 비용 |
| 소모품비 | 20만 원 | 가운, 수건, 오일, 세탁비용 |
| 홍보비 | 30만 원 |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비용 |
| 상환금 | 40만 원 | 차입금 상환 및 이자비용 |
| 기 타 | 30만 원 | 카드결제수수료 및 예비비 |
| 합 계 | 500만 원 | |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월 수익 (월 매출액 - 월비용액) (C - D) |
| 400만 원 |

(3) 매출 저조 시 대처방안

| | |
|----------------|--|
| 매출 저조시 대처방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장인 대상으로 방문 무료 체험서비스를 실시 - 인근 노인회관등을 방문하여 무료 체험서비스로 효과 홍보 - 안마 바우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도모 - 예비비를 총매출대비 3%를 저축하여 영업 비수기를 대비 |
|----------------|--|

4. 자금 사용계획(월세, 시설비, 집기비품구입, 홍보마케팅비, 운영자금, 기타비용 등은 자부담임)

※ 시설비 및 집기비용구입비 중 센터지원비(500만원)는 대상자 개별적으로 하단 계획표 상에 별도 포함하여 기재

4-1. 자금소요계획

| 분 류 | 세 부 항 목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점포임대 | 전세보증금(센터지원금) | 1 0 0 0 0 0 0 0 0 | 규모 : 30 평/월 임대료 : 100만 원 |
| | 권리금 | | |
| 시설비 | 인테리어 | 1 8 0 0 0 0 0 0 0 | 평당 60만원 |
| | 간판 | 3 0 0 0 0 0 0 0 0 | 옥외 간판 |
| | 컴퓨터 | 1 0 0 0 0 0 0 0 0 | 컴퓨터와 주변기기 |
| | 냉장고 | 1 0 0 0 0 0 0 0 0 | |
| | 세탁기 | 8 0 0 0 0 0 0 0 0 | |
| | 에어컨 | 2 0 0 0 0 0 0 0 0 | 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 |
| | 건조기 | 3 0 0 0 0 0 0 0 0 | |
| 집기비품 구입 | 베드와 매트 | 2 0 0 0 0 0 0 0 0 | 엘리베이션베드1, 안마베드1, 매트2 |
| | 시술복 | 1 0 0 0 0 0 0 0 0 | 남녀 가운 구입비 |
| | 침대시트와 타월 | 2 0 0 0 0 0 0 0 0 | 침대시트 및 타월 구입비 |
| | 주방용품 | 3 0 0 0 0 0 0 0 0 | |
| | 정수기 | 5 0 0 0 0 0 0 0 0 | 정수기 구입비 |
| 초기 운영자금 | 홈페이지 제작비 | 1 0 0 0 0 0 0 0 0 |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비용 |
| | 전단지 및 명함 | 3 0 0 0 0 0 0 0 0 | 전단지, 명함 등 인쇄물 제작비 |
| | 홍보용 판촉물 | 2 0 0 0 0 0 0 0 0 | 판촉물(티슈) 제작비 |
| | 초기 운영자금 | 5 0 0 0 0 0 0 0 0 | 예비비 |
| 개업준비비 | 부동산 중개 및 수수료 | 9 0 0 0 0 0 0 0 0 | 점포계약관련 비용 |
| | 개업비용 | 5 0 0 0 0 0 0 0 0 | 개업고사 등 비용 |
| 총 소요금액 (A) | | 1 3 8 0 0 0 0 0 0 0 | |

4-2. 자금조달계획

| 창업자금분류 | | 금 액 |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센터지원 (C) | 임차보증금 | 100,000,000 원 | |
| | 시설 및 집기, 간판비 등 | 5,000,000 원 | |
| 자부담 (D) | 시설, 운영, 기타자금 | 33,000,000 원 | 개인 보유자금 + 가족 차입 |
| 총 조달금액 합계 (B) = (A) = (C) + (D) | | 138,000,000 원 | |

4-3. 자부담금 현황

| 창업자금분류 | 금 액 |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자기자본(예금, 보험 등) | 20,000,000 원 | 은행 예금(정기적금) |
| 금융기관 대출() | 원 | |
| 가족□친척, 지인으로부터 차입 | 10,000,000 원 | 부모님으로부터 차입 |
| 기타 자금조달(현물 지원) | 3,000,000 원 | 지인의 도움(에어컨, 냉장고) |
| 자부담금 합계 (E) = (D) | 33,000,000 원 | |




<수고하셨습니다>

※ '2015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' 항목설명

| 연번 | 구분 | 설 명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사업개요 | |
| ① | 신청업종 (아이템) | 신청하는 세부업종 |
| ② | 주요상품 (서비스) |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명(서비스명) |
| ③ | 신청업종 신청이유 | 신청업종을 선택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, 기대효과 등을 기재 |
| 2 | 신청업종(아이템) 시장조사 | |
| ① | 신청지역 (입지) |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 지역(동 또는 상권)명을 기재 신청지역은 서류심사에 중요한 검토대상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 |
| ② | 지역(입지) 선정사유 | 신청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로서 상권(입지) 현황 및 전망, 장점 등 입지의 적합성을 위주로 기재 |
| ③ | 신청지역의 경쟁업체현황 | 신청지역의 경쟁 또는 유사업체의 상호명 및 영업시간, 취급 상품 (서비스), 가격 등의 현황을 기재 |
| ④ |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| 대상고객을 분류하여 유형/특징을 서술하고 고객의 수요 및 차별화 된 서비스의 제공방안을 기재 |
| 3 | 신청업종 운영계획 | |
| 3-1 | 아이템 운영방안 | |
| ① | 구매계획 | 영업활동에 필요한 상품 및 재료의 품명 및 가격, 구입처 등을 기재 |
| ② | 상품(서비스) 가격계획 | 판매할 상품(서비스)의 규격 및 가격, 특징 등을 기재 |
| ③ | 영업(홍보)계획 | 거래처 및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 및 홍보 방안을 기재 |
| ④ | 고객관리계획 | 고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및 사후관리활동 기재 |
| ⑤ | 나만의 사업 차별화 방안 | 상품(서비스)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재 |
| 3-2 | 아이템 수익계획 | |
| ① | 월 매출액 산출 | 상품(서비스)의 규격별 단가, 판매량을 추정하여 월 매출액을 산출 |
| ② | 월 비용 및 이익 산출 | 비용구분별 비용을 산출하여 월 발생비용을 산출함 |
| ③ | 매출저조 시 대처방안 |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영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 |
| 4 | 신청업종 운영계획 | |
| ① | 자금소요계획 | 세부항목별 금액과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총 소요금액을 산출 |
| ② | 자금조달계획 | 센터 지원금액과 자부담금액을 구분하여 금액을 산출하고,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을 기재 |
| ③ | 자부담금현황 | 자부담금 내용별 금액을 산출하고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을 기재 |

【붙임4. 제출서류 중 (사실증명)증빙예시】

[사실증명,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]

| | | | | | |
|--|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발급번호 | | 사실증명 | | 처리기간 | |
| | | | | 즉시 | |
| 납세자 | ① 주소또는거소 (법인은 본점소재지) | | | | |
| | ② 사업장소재지 | | | | |
| | ③ 상호(법인명) | | | | |
| | ④ 사업자등록번호 | | ⑤ 전화번호 | | |
| | ⑥ 청명(대표자) | | ⑦ 주민(법인)등록번호 | | |
| | ⑧ 사용목적 | | ⑨ 수량 | 1 | |
|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
| 대리인 인적사항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전화번호 | 납세자와의 관계 | |
| | | | | | |
|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|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◎ 위 납세자는 2014년 06월 01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. </div>  <b style="color: green;">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| | | | |
|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
| | | 년 월 일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 신청인(본인) </div> (서명 또는 인) 대리인 | | | |
| 동대문 세무서장귀하 | |  | | | |
|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. | | | | | |
| 접수번호 | | 성명 기입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| | | |
| 담당부서 | 민원봉사실 | 년 월 일 | | | |
| 담당자 | |  | | | |
| 연락처 | | 동대문 세무서장 | | | |



☎ 02-2600-0000 **국세청**

[사실증명,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]

| | | | | |
|---|---|--|------|----------|
| 발급번호 | | 사실 증명 | | 처리기관 |
| | | | | 즉시 |
| 납세자 | ① 주소 또는 거주 (법인은 본점소재지) | | | |
| | ② 사업장소재지 | | | |
| | ③ 상호(법인명) | | | |
| | ④ 사업자등록번호 | ⑤ 전화번호 | | |
| | ⑥ 성명(대표자) | ⑦ 주민(법인)등록번호 | | |
| | ⑧ 사용목적 | ⑨ 수량 | 1 | |
|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
| 대리인 인적사항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전화번호 | 납세자와의 관계 |
|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㉔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. </div> | | | | |
|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| 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| | | |
| 위의 내용의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
| 마포세무서장 귀하 | | 년 월 일 신청인(본인) (서명 또는 인) 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| | |
| | |  | | |
| 접수번호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담당자 연락처 | |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. | | |
| | | 성명 기입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| | |
| | | 년 월 일 | | |
| | | 마포세무서장  | | |



NIS 국세청



【붙임5.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】

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-------|--|
| 33409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 중 | 담배 중개업 |
| 46109 중 |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|
| 46209 중 | 잎담배 도매업 |
| 46331 | 주류 도매업 *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|
| 46333 |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
| 46416 중 | 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|
| 46463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221 중 | 주류 소매업 *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|
| 4764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59 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 |
| 47993 중 | 다단계 방문판매 |
| 55112 | 여관업 |
| 56211 | 일반유흥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흥주점업 |
| 58122 중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|
| 58211, 58219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9 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 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 |
| 68 | 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|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-|---|
| |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자문및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|
| 6939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|
| 71520 | 지주회사 |
| 71531 중 |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 |
| 731 | 수의업 |
| 75330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 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5501 | 일반 교과 학원 *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교과과정을 교육 혹은 보습(일정한 학과과정을 마치고 학습이 부족한 교과를 다시 보충하여 익힘)하는 산업활동 * (예시) 일반교과학원, 지역아동센터(일반교과교육), 공부방(일반교과교육), 학습향상클리닉(입시교육위주), 검정고시학원, 고입학원, 과외학원, 교습소(일반교과교습소), 대입학원, 보습학원운영, 속셈 학원, 일반강습소운영(진학입시), 입시학원운영, 진학학원, 학원(일반강습소) |
| 86 | 보건업 *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지압치료(86902)는 보건업에 해당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 |
| 91113 | 경주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9122 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91221 중 |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|
| 91241 중 | 복권 판매업 |
| 91249 |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
| 9612 중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²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|

※ 채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(46331), 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중), 여관업(55112), 일반교과학원(85501), 무도장운영업(91291)을 용자대상에 포함하며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의 경우 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용자 허용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□학원업종 중

- 논술학원(85699), 공부방(독서위주, 90212), 예체능계열, 외국어(회화, TOFEL, JLPT 등 자격증 등, 85502) 지원가능
- ☞ 단,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체명에 '업시', '보습' 등이 들어간 경우 지원제외

□전문업종 중

- 약국(47811), 한약방(47811)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
- 한의원(86203)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
- 치료목적의 미술심리치료, 성장지원센터, 눈동자운동, 유아심리치료, 척추교정서비스, 언어치료서비스, 뜸치료서비스, 가정치료사, 검안소, 교정사(언어장애), 말더듬교정사, 물리시술원, 물리요법서비스(유사의료), 뼈교정 등은 유사 의료업(86902)으로 지원불가
- ☞ 사업자등록증상 아동관련상담서비스(87299)로 표시되나 사업범위가 주의력 결핍, 과잉행동장애,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,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프로그램(미술치료, 놀이치료, 음악치료, 심리운동 등)을 병행하는 경우
→ 치료목적의 보건업에 속하므로 지원불가

□도소매업 중

-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
- 성인용품소매(47859) 지원불가
-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□기타

-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